



## 보도자료

▶ 안전정책과 과 장 정순호  
사무관 임영미

TEL : 2110-7128~30

E-MAIL : agoodworld@hanmail.net

FAX : 503-4490

▶ 2005. 6. 배 포

▶ 총 쪽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#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및 심의사항 조정
-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
- 직업성암 등 유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알 권리 강화

□ 사업장 특성에 맞는 노사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고,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안전·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다.

□ 100인 이상 사업장은 노·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

○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(유해·위험업종은 50인)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

- 1,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
- 노사협의회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처리되는 비율이 23%에 그치는 등 운영에 한계가 있었음
- 따라서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체계 확립이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였으며,
- 신규도입 기계·기구 및 원재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, 신규기계 조작·취급 미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음

□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음

-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로 인한 사망만인율이 선진외국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
  - ※ '02년 사망만인율(사고성 사망) : 한국 1.30, 일본 0.32, 독일 0.23, 미국 0.37
- 안전보건상의 조치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일반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처벌함으로써
-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망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범위반에 대한 사후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- 따라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

※ 현행 5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 ⇒ [개정] 10년 이하 징역,  
5억원 이하 벌금

□ 직업성 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음

○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·사용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작성·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나

- 사업주가 영업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“화학물질의 명칭·성분 및 함유량”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- 그 결과 근로자 건강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발암성 물질 까지도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 건강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

○ 따라서 사업주가 영업비밀로써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식별정보를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,

-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물질 등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칭·성분·함유량을 기재토록 하였음

※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는 물질명 및 내용(명칭·성분·함유량)은 법 개정 후 시행규칙 또는 고시 개정시 반영 예정

## □ 참고자료

### <1>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의 비교

구분	산업안전보건위원회	노사협의회
법적 근거	산업안전보건법	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
설치 대상	100인 이상 사업장, ※ 유해·위험업종의 경우 50인 이상	30인 이상 사업장
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사 동수로 구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로자위원 : 근로자대표, 명예산업안전감독관(위촉한 경우),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근로자</li> <li>- 사용자위원 : 당해 사업의 대표자, 안전·보건관리자 각 1인, 산업보건의(선임한 경우),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</li> </ul> </li> <li>○ 노사협의회로 구성하는 경우 :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·명예산업안전감독관(위촉한 경우),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를 포함한 경우 노사협의회를 산안위로 간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사 동수로 구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노사 각 3인 이상 10인 이내</li> </ul> </li> </ul>
논의 사항	<p><b>&lt;심의의결사항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</li> <li>-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</li> <li>- 근로자의 안전·보건 교육</li> <li>-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</li> <li>- 근로자 건강관리</li> <li>-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</li> <li>-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·유지</li> </ul> <p><b>&lt;심의사항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</li> <li>-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</li> </ul>	<p><b>&lt;협의사항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</li> <li>- 근로자의 채용·배치 및 교육훈련</li> <li>- 노동쟁의의 예방</li> <li>- 근로자의 고충처리</li> <li>- <b>안전·보건·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</b></li> <li>- 인사·노무관리의 제도개선</li> <li>-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·재훈련·해고 등 고용 조정의 일반원칙</li> <li>-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</li> <li>- 임금의 지불방법·체계·구조 등의 제도 개선 등</li> </ul> <p><b>&lt;의결사항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</li> <li>-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</li> <li>-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</li> <li>-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미의결 사항</li> <li>- 각동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</li> </ul>

## - 외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

국 가	설치 대상	구성	회의	안 건
독일	20인 이상	안전보건위원회를 종별 업원 평의회와 도로 설치	매년4회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 보호 사항</li> </ul> </li> <li>○ 새로운 기계류 또는 변경장치의 계획과 설계, 작업변경, 작업과정 등 사항</li> </ul>
일본	50인 이상	산업위생위원회를 노사협의회와 도로 설치	매월1회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애의 방지를 위한 기본대책</li> <li>○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유지·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작업환경측정 평가, 작업관리, 건강진단, 환자의 취업금지, 건강교육, 건강의 유지·증진조치</li> </ul> </li> <li>○ 산업재해의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으로 안전·위생에 관한 것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안전에 관한 규정 작성에 관한 것, 안전교육의 실시계획 작성에 관한 것.</li> <li>- 신규로 도입한 기계, 기구 및 기타 설비 또는 원재료에 관련된 위험방지에 관한 것.</li> <li>- 위생에 관한 규정 작성에 관한 것, 위생교육의 실시계획 작성에 관한 것</li> </ul> </li> </ul>
프랑스	50인 이상	안전보건 위원회를 공장위원회와 도로 설치	매년2회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장의 시설설비 및 기계류별로 위험성의 빈도 중대성 파악</li> <li>○ 새로운 기계류 또는 변경장치의 계획과 설계, 작업변경, 작업과정 등 사항</li> <li>○ 안전보건 관련 조직(노동조직의 방식)</li> <li>○ 건물 또는 건물집단의 규모와 분포배치</li> <li>○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련 사항</li> </ul>
스웨덴	50인 이상		매년4회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장의 위험한 물질의 사용취급 관리</li> <li>○ 새로운 기계류 또는 변경장치의 계획과 설계, 작업변경, 작업과정 등 사항</li> <li>○ 근로자 사고예방 관련한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사항</li> </ul>
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비율

사업장규모	응답 사업장수	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여부(%)	
		별도설치	별도설치 하지 않음
50~99인	123(100)	42(34.1)	81(65.9)
100~299인	62(100)	26(41.9)	36(58.1)
300~999인	108(100)	93(86.1)	15(13.9)
계	293(100)	161(54.9)	132(45.1)

※ 출처 :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안 중 주요규제 신설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(박두용, '04년)

-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안전 처리비율

사업장규모	조사사업장수	노사협의회에 의한 활동여부(%)		
		예	아니오	무응답
50~99인	81(100)	16(19.8)	63(77.8)	2(2.5)
100~299인	36(100)	6(16.7)	29(80.6)	1(2.8)
300~999인	15(100)	8(53.3)	7(46.7)	0(0.0)
계	132(100)	30(22.7)	99(75.0)	3(2.3)

※ 출처 :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안 중 주요규제 신설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(박두용, '04년)

## <2> 가중처벌 입법례

<국내사례>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8조제3항

第38條 (罰則) ①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·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금고에 처한다.

※ 전기공사업법 제40조제2항,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제2항,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제2항,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43조제4항,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제5항,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8조제3항

<외국사례> 미국 산업안전보건법(OSHAct) 제17조(민사벌칙금 및 형사벌)

(a)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주는 5,000~70,000달러 이하의 민사벌칙금(civil penalty) 부과

(e)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250,000달러 이하의 벌금(fine)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

### <3>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는 물질(잠정안)<88종>

#### ○ 선정이유

- 사람에게 암을 유발시키는 등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주는 물질로서 제조·사용·양도·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한 물질(66종)과
- 화학산업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제조·사용 등을 금지시킬 경우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려되어 허가를 받도록 한 물질(13종)
- 화학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경우 발암성 등 심각한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(9종)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명칭 등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중대한 건강장해가 예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

#### ○ 물질명

구분	물질명
계	88종
금지물질 (66종)	황린 성냥,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(5퍼센트 이하 제외),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(PCT), 4-니트로디페닐과 그 염, 악티노라이트석면,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, 베타-나프틸아민과 그 염, 청석면 및 갈석면,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(5퍼센트이하 제외), 2-나프틸아민, 나트로펜, 다이알리포스, 디다티, 디메토에이트, 1,2-디브로모에탄, 1,2-디브로모-3-클로로프로판, 디술포톤, 디엘드린, 렘토포스, 메타아미도포스, 모노크로토포스, 벤지딘, 비산 납, 비스(2-클로로에틸)에테르, 비스(클로로메틸)에테르, 스트리시딘, 4-아미노비페닐, 아세트산 탈룸, 아세트산 페닐수은, 아크린아트린, 안투, 알드린, 알디캡, 엔도술판, 엔드린, 이소벤잔, 인화 알루미늄, 질산 탈룸, 캠페클로르, 캠타폴, 캠타탄, 클로로벤질레이트, 클로로피크린, 클로르단, 클로르디메폼, 트리스(2,3-디브로모프로필)포스페이트, 트리플루라린, 2,4,5-티, 파라콰트 염류, 파라티온-메틸, 파라티온,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, 펜타클로로페놀, 펜피록시메이트, 포스파미돈, 플루아지남,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, 피라클로포스, 피리미닐, 피비비, 피시비, 핵사클로로 시클로hex산, 헵타클로르, 황산 탈룸

구분	물질명
허가물질 (13종)	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, 알파-나프틸아민과 그 염, 크롬산 아연, 오로토-톨리딘과 그 염, 디아니시딘과 그 염, 베릴륨,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, 크롬광, 휘발성 콜타르피치, 황화니켈, 염화비닐, 벤조트리클로리드, 석면(악티노라이트석면, 안소필라이트석면, 트레모라이트석면, 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외한다)
발암성 물질 (9종)	벤젠, 1,3-부타디엔, 사염화탄소, 포름알데히드, 니켈 및 그 화합물(불용성화합물에 한함), 삼산화안티몬, 카드뮴 및 그 화합물, 크롬 및 그 화합물(6가크롬에 한함), 산화에틸렌

## ○ MSDS 제도 개요

- MSDS란 화학물질의 유해·위험성, 응급조치 요령,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주는 자료(Material Safety Data Sheet)

※ 관련규정 :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, 시행령 제32조의2, 시행규칙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8

### - 사업주 이행사항

- MSDS의 작성·비치 또는 게시
-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
- 근로자에 대한 교육
- 화학물질 양도 또는 제공시 MSDS 양도 또는 제공 등

※ MSDS 작성 항목(16종)

-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| 9. 물리화학적 특성    |
| 2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| 10. 안정성 및 반응성  |
| 3. 위험·유해성          | 11. 독성에 관한 정보  |
| 4. 응급조치요령          | 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 |
| 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     | 13. 폐기시 주의사항   |
| 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    | 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 |
| 7. 취급 및 저장방법       | 15. 법적 규제현황    |
| 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  | 16. 기타 참고사항    |